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1.

발 의 자 : 추경호 · 김대식 · 김위상
윤한홍 · 박준태 · 서지영
조지연 · 김정재 · 서천호
안철수 · 박덕흠 · 박충권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,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,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,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,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

하도록 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, 제75호 각호 외의 부분, 제76조 제1항제3호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90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육아휴직 급여 등”을 “아이돌봄기간 급여 등”으로 한다.

제5장제1절의 제목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70조의 제목 “(육아휴직 급여)”를 “(아이돌봄기간 급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육아휴직을”을 각각 “아이돌봄기간을”로,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, “육아휴직”을 각각 “아이돌봄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, “육아휴직 기간”을 “아이돌봄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육아휴직 급여액”을 “아이돌봄기간 급여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71조의 제목 “(육아휴직의 확인)”을 “(아이돌봄기간 사용의 확인)”으

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제73조의 제목 “(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)”을 “(아이돌봄기간 급여의 지급 제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육아휴직 기간”을 각각 “아이돌봄기간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각각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육아휴직을”을 “아이돌봄기간 사용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각각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관련된 육아휴직”을 “관련된 아이돌봄기간 사용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각각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육아휴직 기간”을 “아이돌봄기간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각각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7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각각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육아휴직”을 “아이돌봄기간”으로 한다.

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난임치료휴가”를 “희망출산휴가”로 한다.

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“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”을 “희망출산휴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77조제1항 후단 중 “육아휴직”을 “아이돌봄기간”으로, “난임치료휴가”를 “희망출산휴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육아휴직”을 “아이돌봄기간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77조의5제3항 후단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, “육아휴직”을 “아이돌봄기간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 요건”을 “아이돌봄

기간 급여 요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각각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, “육아휴직 급여 등”을 “아이돌봄기간 급여 등”으로 한다.

제77조의10제3항 후단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, “육아휴직”을 “아이돌봄기간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 요건”을 “아이돌봄기간 급여 요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각각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, “육아휴직 급여 등”을 “아이돌봄기간 급여 등”으로 한다.

제80조제1항제3호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87조제1항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90조제1항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106조제3호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107조제1항제4호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110조제1항제10호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112조제1항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제116조제1항제3호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를 “아이돌봄기간 급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희망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고용보험사업)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(이하 “보험사업”이라 한다)으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, 실업급여, <u>육아휴직 급여</u>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.	제4조(고용보험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이돌봄기간 급여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보험료) ① (생 략)	제6조(보험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. 다만,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, 제70조제1항에 따른 <u>육아휴직 급여</u> 의 지급,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, 제75조·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·제77조의9에 따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이돌봄기간 급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

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제70조(육아휴직 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(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)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장 아이돌봄기간 급여 등

제1절 아이돌봄기간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제70조(아이돌봄기간 급여) ① --

-----아이돌
봄기간을-----

-----아이돌봄기간을-----

-----아이돌봄기간 급여-----
-----.

② -----아이돌봄기간
급여-----
아이돌봄기간-----
-----아이돌봄기간-----

-----.

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(육아휴직의 확인)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73조(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)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

아이돌봄기간 급여

③

아이돌봄기간 급여

아이돌봄기간

④ 아이돌봄기간

급여액

⑤ 아이돌봄기간 급여

제71조(아이돌봄기간 사용의 확인)

아이돌봄기간 급여

제73조(아이돌봄기간 급여의 지급 제한 등) ① 안

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
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
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
하지 아니한다.

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
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
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
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
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
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
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
여 지급할 수 있다.

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
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
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
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
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
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
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
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
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
하지 아니하다.

이돌봄기간-----

-----아이돌봄기간 급여---

② -----아이돌봄기간---

-----아이돌봄기간 급
여-----.

③ -----

아이돌봄기간 사용-----

④ -----

-----아이돌봄기간 급여---

-----아이돌봄기간
급여-----.

-----관련된 아이돌봄
기간 사용-----아이돌

봄기간 급여-----

-----아이
돌봄기간 급여-----

-----.

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 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74조(준용) ①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구직급여”는 “육아휴직 급여”로 본다.

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,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“구직급여”는 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”로 보고, 제71조 및 제73조 중 “육아휴직”은 각각 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”으로 본다.

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

⑤ -----
-----아이돌
봄기간-----

-----아이돌봄기간 급여-----

-----아이돌
봄기간 급여-----
-----.

제74조(준용) ① 아이돌봄기간 급여-----
-----.

-----아이돌봄기간 급여-----.

② -----

-----.

-----아이돌봄기간-----
-----.

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 --

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(이하 “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

1. · 2. (생략)

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임금(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. 다만, 피보

출산휴가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희망출산휴가
기간. -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77조(준용) ①

.

아이돌봄기간

희망출

산휴가.

②

아

이돌봄기간

산·사산휴가”로, “육아휴직 급여”는 “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”으로 본다.

제77조의5(준용) ①·② (생략)

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“구직급여”는 “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제73조제4항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는 “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육아휴직”은 “출산 또는 유산·사산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 요건”은 “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”으로 본다.

④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·구직급여·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, 제99조(제2항은 제외한다)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

-아이돌봄기간 급여-----

-----.

제77조의5(준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-아이돌봄기간 급여-----
-----아이돌
봄기간-----
-----아이돌봄기간
급여 요건-----
-----.
-----.

④ -----

-----.

-----.

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
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 및 “제4
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
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
전후휴가 급여등”은 각각 “제5
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
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실업급여”
는 각각 “구직급여”로, “사업
장”은 각각 “사업장 및 피보험
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
자의 사무소”로, “사업주”는 각
각 “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
신고하여야 하는 자”로, “근로
자”는 각각 “예술인”으로, “육
아휴직 급여 등”은 “출산전후
급여등”으로, “제4장”은 “제5장
의2”로, “제5장에 따른 육아휴
직 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
은 “제5장의2에 따른 출산전후
급여등”으로, “실업급여·육아
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
급여등”은 “구직급여·출산전
후급여등”으로 본다.

-----아이돌봄기간 급여

-----아이돌봄기간 급
여-----

-----안
이돌봄기간 급여 등-----

-----아이돌봄기간 급여-----

-----아이돌봄기
간 급여-----

-----.

제77조의10(준용) ①·② (생략)

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반환명령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“구직급여”는 “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제73조제4항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는 “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육아휴직”은 “출산 또는 유산·사산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 요건”은 “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”으로 본다.

④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·구직급여·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, 제99조(제2항은 제외한다)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 및 “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

제77조의10(준용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③ -----

아이돌봄기간 급여 -----
----- 아
이돌봄기간 -----
----- 아이돌봄기
간 급여 요건 -----

-----.

④

아이돌봄기간
급여

아이돌봄기간

전후휴가 급여등”은 각각 “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실업급여”는 각각 “구직급여”로, “사업장”은 각각 “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”로, “사업주”는 각각 “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”로, “근로자”는 각각 “노무제공자”로, “육아휴직 급여 등”은 “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제4장”은 “제5장의3”으로, “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은 “제5장의3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실업급여 ·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은 “구직급여 · 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 본다.

제80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
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
한다.

1. ~ 2의2. (생략)

급여-----

-아이돌봄기간 급여 등-----

-----아이돌봄기간 급여

-----아이돌

봄기간 급여-----

제80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
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
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<u>육아휴직 급여</u>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 제106조(준용)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, 제27조의2, 제27조의3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, 제29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3, 제30조, 제32조, 제39조,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. 1. 2. (생 략) 3. <u>육아휴직 급여</u>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제107조(소멸시효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 1. ~ 3. (생 략) 4. 제5장에 따른 <u>육아휴직 급여</u>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	-----<u>아</u> <u>이돌봄기간 급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06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아이돌봄기간 급여</u>----- ----- 제107조(소멸시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<u>아이돌봄기간</u> <u>급여</u>-----
---	--

지원·위탁 및 실업급여·<u>육아</u> <u>휴직 급여</u>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(생 략) 제116조(벌칙) ① 사업주와 공모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 1.·2. (생 략) 3. 제5장에 따른 <u>육아휴직</u> <u>급</u> <u>여</u>, <u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</u> <u>급</u> <u>여</u>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. (생 략) ② (생 략)	-----<u>아이돌봄</u> <u>기간 급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116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<u>아이돌봄기간</u> <u>급여</u>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